의안번호	제2823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4. 8. 23.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23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김향숙, 김석한, 허옥희, 최두임, 이쌍자, 김원순 의원 (6인)

1. 제안이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 현행: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변경: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불법촬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

다.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라.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및 협조(안 제5조 ~ 제7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40호

- 예고기간: 2024. 8. 23.(금) ~ 2024. 8. 28.(수)[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1건(환경과)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2조(정의)2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으로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살펴 볼 때 ○ 다중이용시설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교육 부서에서 신설 조례 관리 요함.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체계 구축
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특별관리대상의 지정
4. 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5. 안심스크린 설치 등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

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

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